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
------	-----

제출년월일 : 2002. 11.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자연재해대책법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안 제2조)
- 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안 제3조)
- 다. 재해기간 파견근무(안 제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정기관)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구성)

○ 입법예고 : 결과 의견 없음

4, 분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통제관, 담당관”을 “차장, 통제관, 보좌관, 담당관, 분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제관과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을 “실무반”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부서장(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급이상, 공사의 경우 과장급이상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되,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다.

1. 고성군
2. 고성교육청
3. 고성경찰서
3.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4. 통영소방서
5. 한국전력고성지점

6. KT고성지점

8. 농업기반공사고성거제지사

9. 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본부원은 <u>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u>으로 구성한다.</p> <p>②<u>통제관과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u>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p>	<p>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u>차장, 통제관, 보좌관, 담당관, 분담관</u>-----.</p> <p>②<u>실무반</u> ----- ----- -----.</p>
<p>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u>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성군</u> 2. <u>고성경찰서</u> 3. <u>제8358부대 117연대 2대대</u> 4. <u>고성교육청</u> 5. <u>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u> 	<p>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구성) <u>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부서장(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급이상, 공사의 경우 과장급이상)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되,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성군</u> 2. <u>고성교육청</u> 3. <u>고성경찰서</u> 4. <u>육군 제8358부대 2대대</u> 5. <u>통영소방서</u> 6. <u>한국전력고성지점</u> 7. <u>KT고성지점</u> 8. <u>농업기반공사고성거제지사</u> 9. <u>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u>
<p>제4조(생략)</p>	<p>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 ----- ----- ----- ----- ----- <u>공무원 또는 관계관</u>-----.</p>